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14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8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안 제158조의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Ⅲ. 검토의견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58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¹⁾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²⁾ ③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³⁾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공익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매년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투입하여⁴⁾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기본 안전 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사망사고 반복, 대형 사고(동시 2명 이상 사망)도 다수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직업안전법」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2025년 산재예방프로그램 집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계획액은 1조 3,081억 5,600만원임

발생하는 등 사고사망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⁵⁾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중앙 정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50인 미만)까지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와 형식적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 의식과 경각심 저하에 있다고 분석하여⁶⁾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일환으로 안전 의식·문화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고,⁷⁾ 관련 세부사항을⁸⁾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신규로 포함시킨바,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신고포상금 제도 이행에 필요한 지출이 기금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부정한 포상금 수령에 대한 환수, 포상금 지급 및 환수의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면서, 부칙에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적용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고용노동부 소관 신고 포상금제도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⁹⁾ 신고 포상금제도의 소관 부처 자의적 운영 방지와 탄력적

5) (사고사망자) '22년 644명 → '23년 598명(△46명) → '24년 589명(△9명)

6)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 p.3

7)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 p.22

8)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4154-357)으로 111억 4,200만원을 계획함

9) 각주1번과 각주2번 참조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임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10)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1건당 50만원, 산재은폐, 사용중지·작업중지 등 정부명령 미이행의 경우 1건당 500만원, 1인당 1년 최대 3건까지 1,000만원을 한도로 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545